

## 생활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독교적인 공동생활을 통한 개개인의 신앙과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 설치된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생활관의 명칭은 루터생활관(남, 여)이라 한다.

**제3조(개방기간)** 생활관의 개방기간은 본교 학사일정에 따른 수업기간 및 방학기간으로 하되 교무위원회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할 수 있다. (2004.2.25. 개정),(2013.7.29.개정)

**제4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소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관장은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5조(생활관장 및 사감)** ① 생활관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생활관장 및 생활관 사감을 둔다.

② 생활관장 및 사감이 선발되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2017.12.29.개정)

**제6조(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목처장, 교학처장, 총무처장, 신학과장, 사회복지학과장, 언어치료학과장, 상담심리학과장, 생활관장, 사감, 학생 대표 2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 (2012.9.27.개정),(2014.2.13.개정),(2016.10.18.개정),(2019.12.31.개정)

**제7조(사생회)** 생활관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사생회를 구성하며 이에 따른 사생회칙을 따로 만든다.

**제8조(입사자격)** 본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을 필한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원서 제출자 중 서울, 경기지역 외 거주 학생을 우선하여 통학거리, 성적, 품행 순에 따라 선발된 자
2. 학칙에 의거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입사 허락을 받은 자 (2012.9.27.신설)

**제9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전(前)학기에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전 학기에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의 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6.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10조(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규율 및 의무와 금지행위의 위반 및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기타 공동생활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납부금)** 사생은 제 납부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사비

1. 입사비는 입사 등록시 해당학기 분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중간에 입사할 경우에도 해당학기 분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방의 여유가 있어 1인 1실 사용을 희망할 경우 생활관장의 허락을 얻어 두 배의 입사비를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납부금의 환불 (2016.10.18.개정)

- ① 자진 퇴사 시 납부금의 반환은 공식 입사일 1일 전까지 취소 할 경우 전액 환불 하며,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금의 20%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 한다. 단, 13주차 이후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 ② 휴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퇴사 시 납부금의 반환은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금의 20%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퇴사시 환불금액 없음
- ③ 강제 퇴사 시 납부금의 반환은 공식 입사일로부터 13주차까지는 납부금의 20%를 공제한 후 잔여일수 환불금액의 70%를 환불한다. 단, 13주차 이후 강제퇴사 시 환불금액이 없으며, 향후 재입사가 불가함

5. 삭제 (2014.2.25.개정),(2014.7.22.삭제)

- ② (2014.2.25.삭제)
- ③ 사생회비

사생회원의 복지를 위해 사생회에서 결정한 약간의 사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통신비 (2016.10.18.신설)
- ⑤ 기타 추가 납부금 (2016.10.18.개정)

1. 기타 추가 납부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4.2.25.신설)

**제12조(규율 및 의무)**

1. 생활관 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라도 관장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2. 남학생의 생활관에는 여학생의 출입을 금하며 여학생 생활관에는 남학생의 출입을 금한다.
3. 사생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생활관 내에서 숙식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는 관장이 정한다.
4. 외부 사람은 낮에 한하여 휴게소에서 면회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관장이 정한다.
5. 사생은 자기 방을 청결하게 하고, 주변 청소 및 미화작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6. 모든 사생은 외출 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3시에 귀사하여야 하며 외박 시에는

### 5-3-1 생활관 운영규정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사생은 사내 시설과 비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파손시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입사 및 퇴사시에 비품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퇴사시에는 개인소유 물품을 모두 가져가야한다.) (2016.10.18.개정)
8. 전열기구의 사용은 일체 불허한다. (2012.9.27.개정)
9. 사감은 사생 및 기숙사의 관리를 위하여 점호를 실시한다. (2013.7.29.개정)
10. 사생이 재실한 경우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호실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2016.10.18.신설)
  - ①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② 부재중 점검에 대해 해당호실 사생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 ③ 사전공지된 호실점검 기간 중 2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 (2번째 재방문 시 점검실시)
  - ④ 재실중임에도 무단으로 호실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11. 사생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생상담 지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8.2.19.신설)

#### 제13조(금지행위)

1. 음주, 흡연, 도박 행위
2. 전열기, 개인용 텔레비전,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의 사용 또는 반입
3.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4. 타인물품의 도용
5. 시설물의 무단 이용 및 가공
6. 고의적인 기물의 손상 및 파괴
7. 식당비품의 무단 반입, 반출
8. 낙서, 광고물의 무단 전시 및 배포
9. 기타 생활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14조(징계)** 사생으로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교수회의를 거쳐 징계처분 한다.

**제15조(생활관 간담회)** ① 생활관장 및 생활관 사감, 생활관 사생은 매 학기 1회 이상 간담회를 진행한다.

② 생활관 사감은 생활관 사생회를 대상으로 매 달 1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2017.12.29.개정)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